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도안내서

2023. 9.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도안내서

2023. 9.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도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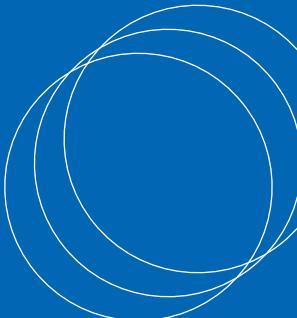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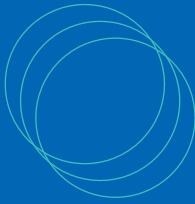


I.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제도 개요

1. 법적근거	2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3. 제도 이행 절차	3
4.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	3
5. 어린이 보호포장	4
6. 표시·광고의 제한	5
7. 위반시 처분 사항	5

II. 안전기준 적합 확인

1. 안전기준 적합 확인	6
2.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7



II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1. 신고절차 11
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 내용 12
3. 파생제품 구분 방법 13
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5

IV.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의 표시사항

1.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제6조에 따른 표시 사항 16
2. 전품목 필수 표시항목 및 조건부
표시항목 17
3. 표시사항 작성방법 18
4. 표시사항의 표시 위치 28
5. 표시면적에 따른 표시사례 31
6. 기타 표시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33

I.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 제도 개요

1. 법적 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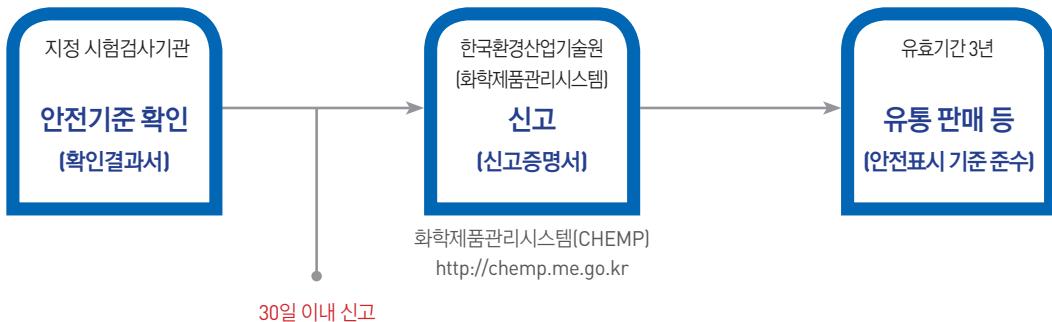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19.1.1)
 -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1.1)
 - 제5조, 제7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시행 2019.2.12)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

■ 지정 품목 : 14분류 43품목(안전기준 미고시 7품목 포함)

분류	품 목	비 고	처리기관
세정제품	세정제 / 제거제		
세탁제품	세탁세제 / 표백제 / 섬유유연제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 특수목적코팅제 / 녹 방지제 / 윤활제 / 다클질보조제 / 마감제 / 경화제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 접합체 / 경화촉진제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 탈취제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 물체 도색제	확인 및 신고	시험검사기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동차 전용 제품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부동액		
인쇄 및 문서 관련 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 인주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 문신용 염료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살균제품	살균제 / 살조제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	보건용 살충제 / 보건용 기피제 /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기피제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보존·보존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확인 및 신고	시험검사기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타	초 / 습기제거제 / 인공 눈 스프레이 / 공연용 포그액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승인	국립환경과학원

3. 제도 이행 절차



4. 대표제품 및 파생제품

■ 대표제품은 안전기준 확인 및 신고, 파생제품은 파생신고만 진행



파생 제품

정의(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대표제품)과 비교)

-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안전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고시 제5조)에 변경이 없는 제품
-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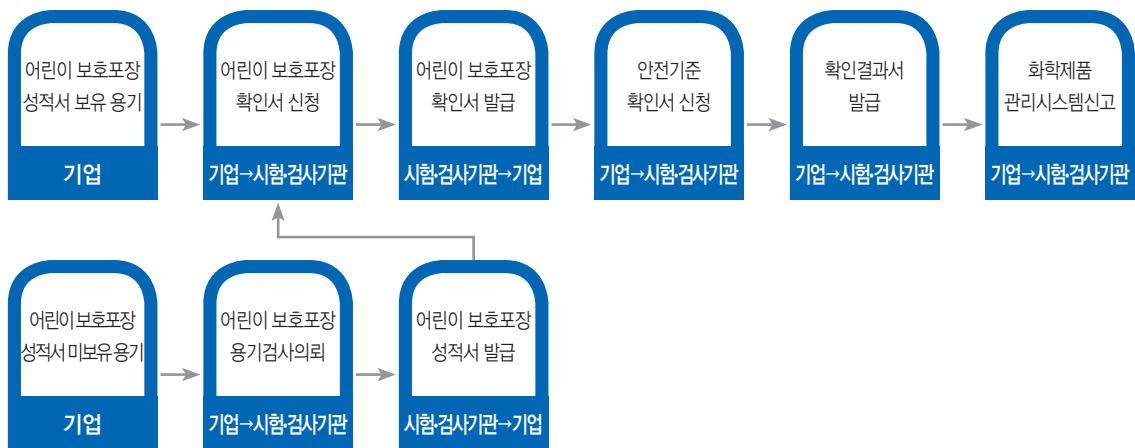
주의

- 파생으로 신고된 제품은 대표제품과 동일한 신고번호 부여
- 안전기준 등 위반시 동일한 신고번호가 부여된 제품은 모두 회수 등 행정조치
- 기업에서 파생제품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필요

5. 어린이보호포장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및 신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4]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 신청 방법
 - 어린이보호포장성적서 보유 용기 사용
 - :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를 의뢰하여 발급 받은 후, 어린이보호포장용기가 적용된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서와 함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 어린이보호포장성적서 미보유 용기 사용
 - :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용기검사 의뢰, 어린이보호포장성적서 발급 후 시험·검사기관에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의뢰, 확인서 발급 후 어린이보호포장용기가 적용된 제품의 안전기준 확인서와 함께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



•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됨

필수품목	적용 물질기준			적용제외기준
액체형 자동차형 워셔액	물질	함량/중량	물질(액상제품, 총합 10% 이상)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여 개봉
액체형 자동차형 워셔액	에틸렌글리콜	10% 이상	C3~C13 직쇄형 1차 알코올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된 물질)	개봉이 불가능한 분사형 용기
액체형 순간接著제 (미용접착제 포함)	메틸알콜	3% 이상	이소부틸 알코올(isobutyl alcohol)	개봉 후 1회에 전량이 소모되는 1회용 용기
캡슐형 세탁세제	디클로로메탄	1% 이상	테르펜 알코올(terpene alcohol)	개봉 후 내용물질 직접 노출되지 않은 용기
	1,2-디클로로메탄	10% 이상	C3~C13의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케톤	실제 중량 15kg 이상 제품
	살리실산메틸	5% 이상	C3~C13의 탄소로 구성된 탄화수소	제품의 특성상 별도의 용기나 포장이 어려운 제품
	NaOH or KOH	2% 이상 (NaOH로서)	pH(액상제품)	
	메타크릴산	5% 이상	2.0이하 또는 11.5이상이고 동점도 20.5 mm ² /s 0°하(40도)	
	개미산	5% 이상		
	차아염소산염	2% 이상		
	과산화수소	5% 이상		
	에틸브로모아세테이트	모든 농도		
	모르폴린	5% 이상		
	아세토니트릴	500 mg 이상		

6. 표시·광고의 제한

■ 법적근거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표시기준)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 시 해당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제품 표기 불가 문구 •

무독성

환경·자연
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
친화적

※ 이와 유사한 표현 제품 표기 불가 (무자극, 무공해 등)

7. 위반시 처분 사항

■ 승인·신고(파생신고 포함) 미이행(법 제10조제1항, 제4항, 제6항)

-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 변경 승인·신고 미이행(법 제10조제5항, 제7항)

- (변경미신고/과태료) 3백만원/5백만원/천만원
- (변경미승인/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기준 위반(법 제10조제8항)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광고 위반(법 제34조제1항)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II. 안전기준 적합 확인

1. 안전기준 적합 확인 절차

■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 안전기준 :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관한 안전기준, 어린이보호포장에 관한 안전기준

• 제출 제품 및 서류 •

필수 제출

- 동일한 완제품 4개(최소 용기까지는 완제품)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1부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협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해당시 제출

- 어린이보호포장 검사성적서 1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 검사합격 증명서 또는 KC 마크 사본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관련 증빙자료(ODM일 경우)

•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청 제품의 범위 •

- 제조 공정이 마무리 된 완제품. 이 경우 완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는 표시사항 생략 가능
- 소비자가 직접 제조하는 형태의 DIY용 제품. 원료제품의 둘 이상을 배합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에 물질별 배합비율이 명시되어야 함.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만을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
- 재생용 잉크·토너의 경우에 국내 원료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납품하는 원료제품

2. 확인신청서 작성방법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주요내용 작성방법

작성항목			작성방법
신청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제조방식	<input type="checkbox"/> 주문자 삼표부착 제조(OEM) <input type="checkbox"/> 기타(제조방식 설명)	<input type="checkbox"/> 주문자 개발 제조(ODM)
신청 제품 정보	제조·수입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신고번호(경신의 경우)	유효기간(갱신의 경우)	

주의 사항

✓ OEM 방식과 ODM 방식의 제품 제조사 신청주체가 달라지므로 주의

- OEM 방식(주문자 상표 부착 제조) : 위탁자
- ODM 방식(주문자 개발 제조) : 수탁자

✓ 품목, 제형, 용도는 고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선택

■ [참고] 품목

분류	품 목	분류	품 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성액 및 수정테이프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코팅제품	1. 광택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크닝질보조제 6. 마감제 7. 경화제	여가용품 관리제품	1.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3. 경화촉진제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가파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보존·보존처리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마스크용 제품 : 마스크 패치(위해성 평가 및 신고대상), 마스크 소독제(승인대상)

■ [참고] 제형

구 분	분 류	비 고
분사형	분무기형	품형 포함
	스프레이형	고압가스, 저압가스 등을 이용한 분사방식
	흄증형	
	연소형	
	연무형	
	필터형	
	보충형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기재
비분사형	기타	세부제형 표시
	액체형	
	에멀션형	페이스트형, 로션형, 젤형 포함
	폼형	
	고체형	타블릿형, 파스텔형, 스틱형 포함
	핫멜트형	
	분말형	
	티슈형	
	캡슐형	
	카트리지형	
	펜형	
	붓형	
	팔찌형	
	패치형	
	함침물형	
	탱크형	
	보충형	원제품의 제형을 함께 기재
	기타	세부제형 표시

※ 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비고의 내용에 해당시 해당제형으로 기입

■ [참고] 품목별 용도

품 목	용 도	
세정제	일반용	오븐용, 렌지후드용, 옥실용, 변기용, 카페트용, 세탁조용, 배수관용, 건물 바닥용, 구두용, 가구용, 악기용, 필터용, 기타표면세정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제거제	일반용	얼룩제거용, 섬유 얼룩제거용, 실리콘제거용, 접착제제거용, 가발접착제제거용, 타르·기름제거용, 혈흔제거용, 페인트제거용, 기타제거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세탁세제	섬유용, 가죽용, 흠크라이클리닝용, 신발용, 섬유 얼룩제거용	
표백제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섬유유연제	섬유용, 가죽용, 신발용	
광택코팅제	일반용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금속용, 석재(시멘트)용, 금속장신구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특수목적 코팅제	일반용	빌수용, 방수용, 오염 방지용, 전진기방지용, 미끄럼방지용, 표면보호용, 김서림 방지용(유리용, 거울용, 렌즈용), 가죽연화용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녹 방지제	차량용,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윤활제	차량용, 악기용, 레저용, 공구용, 금속용	
다림질보조제	의류용, 섬유용	
마감제	목재용	
경화제	가죽용	
접착제	일반용, 순간·강력용 ※ 용도별 사용대상 : 고무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가죽용, 섬유용, 금속용, 도자기용(세라믹, 타일), 석재용, 유리용, 종이용, 점토용, 석조물용(석고), 필름용	
접합제	틈새충진용, 이음매접합용, 흡집충진용	
경화축진제	접착제용	
방향제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실내공간용, 섬유용, 가죽용
탈취제	자동차용	실내용
	일반용	실내공간용, 물체용, 밀폐공간용
물체 염색제	의류용, 섬유용, 신발용, 가죽용	
물체 도색제	일반용	목재용, 플라스틱용, 금속용, 유리용, 석재용(시멘트), 가죽용 제형: 분사형(스프레이형)
	자동차용	실내용, 외부용
자동차용 워셔액	일반용, 밸수성용 (용도) 일반용 : 에탄올 주성분, 밸수성용 :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사용한 워셔액에 실리콘 성분 등을 첨가하여 밸수 기능이 있는 워셔액	
자동차용 부동액	차량용(에틸렌글리콜형), 차량용(프로필렌글리콜형)	
인쇄용 잉크·토너	인쇄용 잉크, 인쇄용 토너	
인주	사무용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문서수정용	
미용 접착제	가발용, 체모용, 가속눈썹용, 쌍꺼풀용, 손톱·발톱용	
문신용 염료	눈썹·아이라인용, 입술용, 전신용, 헤어라인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골프용품, 블링용품, 탁구용품	
살균제	일반용	일반물체용, 배수관용, 필터용, 곰팡이제거용, 밀폐공간용
	특수목적용	어린이용, 칫솔·혀크리너용
	전기분해형 살균기용	일반물체용, 물걸레 청소기용, 변기 수조용
살조제	어항용, 분수대용, 연못용, 수영장용	
기피제	쌀벌레용, 좀벌레용, 날벌레용	
목재용 보존제	목재용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공기청정기용, 에어컨용 제형: 필터형	
초	발광용, 방향용	
습기제거제	실내공간용, 가구용, 수납공간용, 신발·섬유용	
인공 눈 스프레이	행사용 제형: 분사형(스프레이형)	
공연용 포그액	공연용(무대연출), 행사용	

* 세부내용은 환경부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2 참고

■ 작성예시 : 국내제조(직접생산), 향초인 경우 → 신청인은 제조자 주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조은향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성명(대표자) 조향기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조석고(02-123-1234) (전자우편:1234@naver.com)
	소재지(사업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9	(전화번호:02-123-1234) (팩스번호:02-123-1235)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제조방식	<input type="checkbox"/> 주문자 상표부착 제조(OEM) <input type="checkbox"/> 주문자 개발 제조(ODM) <input type="checkbox"/> 기타(제조방식 설명)
신청 제품 정보	제조 · 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제품명 좋은향초(라벤더)	용도 방향용
	제형 연소형	중량 · 용량 · 매수 100g
	제조국명 (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 (수입의 경우)
	신고번호 (갱신의 경우)	유효기간 (갱신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신청합니다.

2019년 8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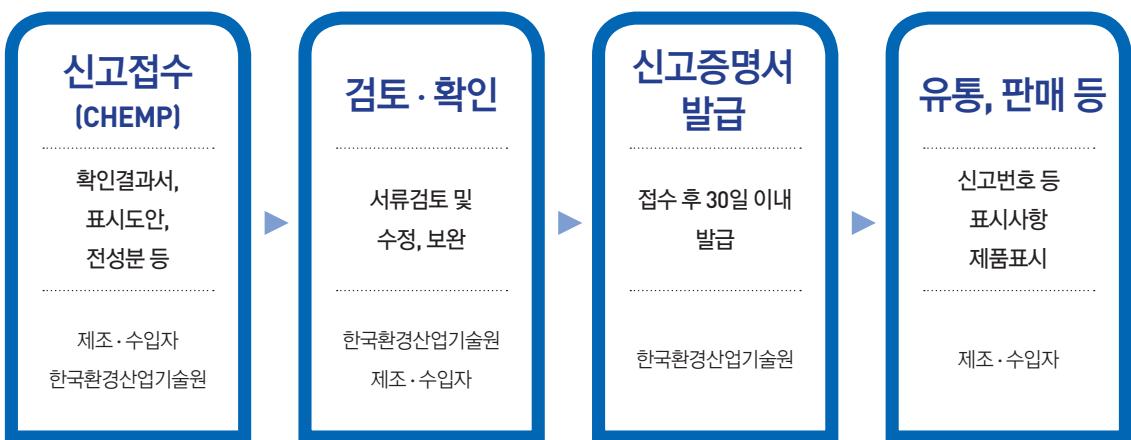
신청인 조석고 (서명 또는 인)

시험 · 검사기관 귀하

III.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1. 신고절차

■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



※ 신고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후 30일(working day 기준)이내 신고

• 신고 필요 서류 •

주요 신고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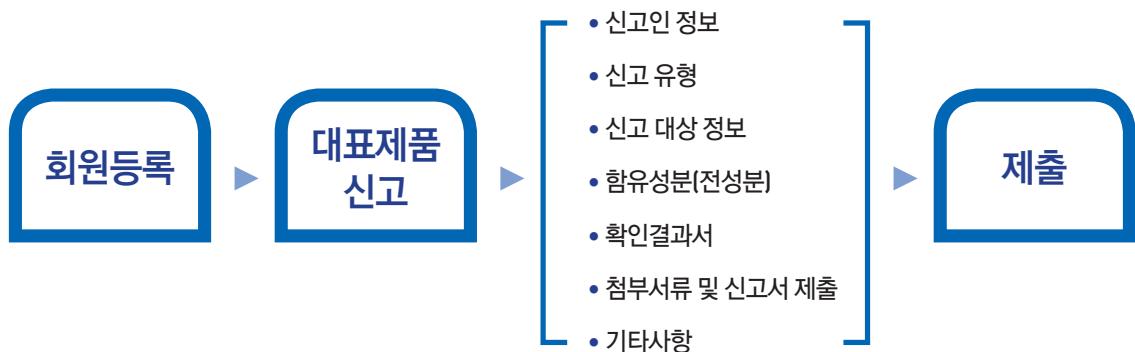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 혼합물 등 Cas. No. 없는 물질의 MSDS
- 안전기준 적합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제품 사진(앞면 및 표시사항이 있는 뒷면) 및 표시도안

해당시 제출

- ODM 납품 증명서류

2.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 내용

■ 안전기준 적합 제품에 대한 신고 절차 (<http://www.chemp.me.go.kr>)



구분	신고 내용
회원등록	기업등록, 일반회원 등록
신고인 정보	사업자등록증 기반
신고유형	제조와 수입구분, 제조는 OEM과 ODM 선택
신고대상정보	제품명, 분류 품목, 제형, 유통기한, 어는점, 액성, 중량 등, 표준사용량,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여부, 사용방법, 사용상주의사항, 응급처치
함유성분	혼합물질, 단일물질 등 전성분 입력 (Cas.No., MSDS, 배합비, 용도, 표시사항물질)
확인결과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내용 입력
첨부서류 및 신고서	제품사진(표시도안 부착), 표시건본,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성분 및 배합비, ODM 납부 증명서류 제품용기 및 포장상자의 표시면적 계산 결과(필요시), 용기재질 동일여부 확인서(필요시)

3. 파생제품 구분 방법

■ 파생제품 구분 절차



• 파생제품 정의 •

(대표제품과 비교)

-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고
- 제품명이 다르면서
-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

○ 용도, 제형 및 제품명 확인

- 대표제품의 용도와 제형 동일여부 및 제품명 확인

구분	대표제품	파생제품
용도	실내공기용, 차량용	동일여부 확인
제형	액체형	동일여부 확인
제품명	라벤더 디퓨저	다른지 여부 확인

○ 안전기준 변경 확인(Cas. No.로 확인)

- 해당품목의 안전기준 물질, 대표제품 성분 및 파생제품 성분 정리 및 확인

• 안전기준물질의 변경 •

✓ 물질 종류의 변경을 의미(→ 추가적인 안전기준 확인·신고 필요)

✓ 동일 물질 함량이 안전기준 이내로 변경될 경우, 파생으로 신고 가능

■ 파생제품 예시

○ 세정제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스타 세정제 골드	스타 세정제 실버	스타 세정제 나노	스타 세정제 파워
용도	일반용(오븐용)	일반용(오븐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오븐용)
제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제품 내 사용물질	프로필렌글리콜 5%	프로필렌글리콜 10%	프로필렌글리콜 5%	메탄올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불가능

○ 방향제(디퓨저)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조은 디퓨저(라벤더)	조은 디퓨저(레몬)	조은 디퓨저(사과)	조은 디퓨저(포도)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제형	액체형	액체형	액체형	액체형
제품 내 사용물질	프로필렌글리콜 5%	프로필렌글리콜 10%	프로필렌글리콜 5%	2-프로판올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불가능

○ 초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조은 캔들(라벤더)	조은 캔들(레몬)	조은 캔들(사과)	조은 캔들(포도)
용도	방향용	방향용	발광용	방향용
제형	연소형	연소형	연소형	연소형
제품 내 사용물질	소이왁스 60%	소이왁스 70%	파라핀왁스 60%	파라핀왁스 70%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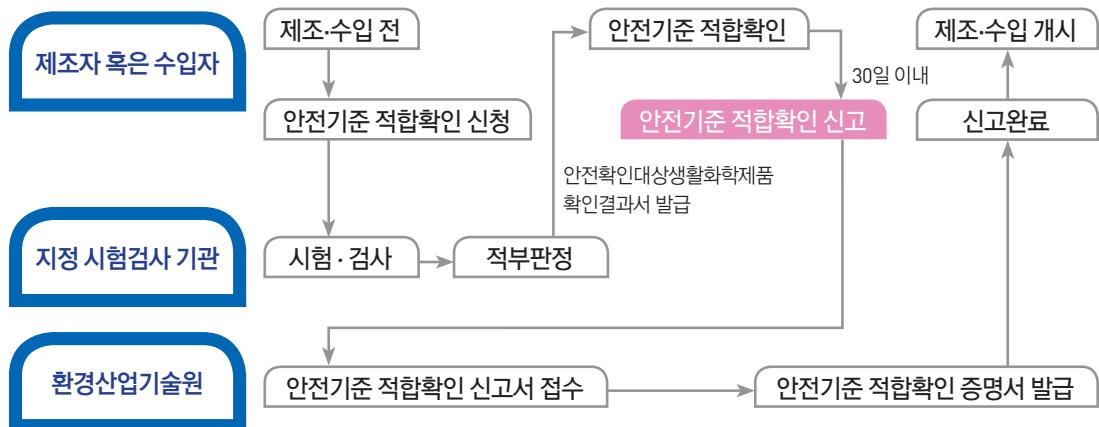
○ 탈취제

구분	대표제품	제품1	제품2	제품3
제품명	좋은 탈취제 골드	좋은 탈취제 나노	좋은 탈취제 실버	좋은 탈취제 에스
용도	일반용(실내공간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실내공간용)
제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분무기형
제품 내 사용물질	프로필렌글리콜 5%	프로필렌글리콜 10%	프로필렌글리콜 5%	벤조산
파생가능 여부	-	가능	불가능	불가능

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 및 신고 개요

■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시험·검사기관 담당자 정보

번호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제품시험분석실	02-2284-1653
2	FIT시험연구원	생활환경사업팀	043-711-8865, 8863
3	KOTITI시험연구원	생활화학제품 담당자	02-3451-7358, 7343, 7388
4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화학분석센터	031-428-3818, 3848, 3857
5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생활제품인증팀	02-2164-1412
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화학제품센터	02-2102-2681, 2664, 2504
7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바이오융합본부	031-538-9422, 9423, 9424

IV.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1.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에 따른 표시사항



[그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

2. 전품목 필수 표시항목 및 조건부 표시항목

<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필수·조건부 표시사항

No	표시항목	필수/조건부 ¹⁾	비고
1	품목	필수	-
2	제품명	필수	-
3	용도	필수	표백제는 계열도 표시
4	제형	필수	-
5	제조연월	필수	-
6	유통기한	조건부	해당없는 제품 생략
7	종량·용량·개수·매수·크기	필수	-
8	어는점	조건부	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9	액성	조건부	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10	표준사용량	조건부	해당없는 제품 생략
11	효과·효능	조건부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에 한함
12	제조사, 주소, 연락처	조건부	국내제조제품에 한함
13	판매자, 주소, 연락처	조건부	제조자 개발생산(ODM)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에 한함
14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	조건부	수입제품에 한함
15	수입자, 주소, 연락처	조건부	수입제품에 한함
16	어린이보호포장대상/ 비대상제품의 표시	조건부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에 한함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주요물질	필수
		보존제	보존기능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알레르기 반응가능물질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기능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형광증백제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에 한함
		기타물질	국내관리규제에 해당하는 물질 등을 함유한 경우에 한함
18	신호어 및 그림문자	조건부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에 한함, 다만 산도조절제인 경우 제외
19	사용방법	조건부	해당없는 제품 생략
20	사용상 주의사항	조건부	품목, 용도, 제형, 함유물질 등에 따라 표시
21	응급처치	조건부	어린이보호포장, 알레르기반응물질 함유에 따라 표시
22	안전기준확인 마크	필수	-
23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필수	-

1) 필수: 모든 제품에 필수로 표시되는 항목, 조건부: 품목, 제형, 용도, 제품 내 함유물질 등 해당여부에 따라 표시되는 항목

3. 표시사항 작성방법

① 품목(필수 표시항목)

- 품목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이하 "확인결과서") 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이하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품목을 동일하게 표시하며 이 때 표시는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이하 "눈에 띄는 방법"이라 함)으로 표시하여야 함

예) 품목: 세정제, 세정제, 세정제 등

② 제품명(필수 표시항목)

- 제품명은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다만, 파생제품의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신고 시 입력한 제품명을 표시하여야 함
※ 파생제품명은 대표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음

예) 제품명: 솔루티스 세정제

③ 용도(필수 표시항목)

- 용도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다만, 표백제의 경우 계열을 함께 표시하여야 함
※ 표백제의 계열 : 과탄산나트륨계, 과봉산나트륨계, 과산화수소계, 염소계, 기타 등

예) 용도: 섬유용(과탄산나트륨계) 또는 자동차용(실내용), 일반용(독재용)

④ 제형(필수 표시항목)

- 제형은 확인결과서 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예) 제형: 액체형 또는 분무기형

⑤ 제조연월(필수 표시항목)

- 제조연월은 "19년 11월", "2019년 11월", "19. 11.[연. 월.]", "2019. 11[연.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제조연월의 표시위치가 별도로 기재된 경우에는 기재된 위치를 문구로 표시하거나 "별도표시" 등의 안내문구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수입 제품에 기 표시된 제조연월의 형식이 국내와 달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읽는법에 대한 설명을 표시하여야 함

예) 제조연월: 별도표시 또는 제품 하단 별도표시 또는 제품 상단 별도표시

⑥ 유통기한(조건부 표시항목: 해당없는 제품 생략 가능)

- 유통기한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에서 직접 판단하여 작성하며 해당 없는 제품은 생략 가능

예) 유통기한: 2020년 11월까지 또는 2020년 11월

※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⑦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필수 표시항목)

-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의 표시는 확인결과서에 기재된 사항을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다만, CHEMP 시스템 신고 시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를 범위로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용기에 맞는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를 표시할 수 있음

표시 예) 중량: 1kg 또는 용량: 100ml 또는 매수: 30매

⑧ 어는점(조건부 표시항목: 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 어는점은 물과의 혼합비율과 혼합비율에 따른 어는점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 또는 그래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음

표시 예)

원액	물	어는점	최저희석비율
100%	0%	-25°C	100%(원액그대로사용)

⑨ 액성(조건부 표시항목: 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 액성은 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표시하며, 표준사용량이 있는 경우 표준사용량을 기재 할 수 있음. 다만, 액성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 해당 되는 모든 액성을 표시하되, 수소이온 농도의 범위값을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수용성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유성" 등의 표시로 대신할 수 있음

표시 예) : 액성: 원액(약산성) 또는 액성: 원액(약산성), 표준사용량(중성)

참고)

수소이온 농도(pH)	액성
11.0을 초과하는 것	알칼리성
8.0 초과 ~ 11.0 이하	약알카리성
6.0 이상 ~ 8.0 이하	중성
3.0 이상 ~ 6.0 이하	약산성
3.0 미만	산성

⑩ 표준사용량(조건부 표시항목: 해당없는 제품 생략 가능)

- 표준사용량은 제품을 사용할 때 제품의 효과적인 기능을 낼 수 있는 적정 사용량으로 ⑦에서 사용한 단위로 표시하여야 함. 또한, 희석해서 사용하는 농축제품의 경우에는 희석비율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에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용량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표준사용량: 물 1L에 5g 사용

⑪ 효과·효능(조건부 표시항목: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에 한함)

- 효과·효능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⑫ 제조자, 주소, 연락처(조건부 표시항목: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제조자, 주소, 연락처는 CHEMP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제조자, 주소, 연락처: 솔루티스,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1호, 02-0000-0000

⑬ 판매자, 주소, 연락처(조건부 표시항목: 제조자개발생산방식의 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 판매자, 주소, 연락처는 CHEMP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판매자, 주소, 연락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02-0000-0000

⑭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조건부 표시항목: 수입제품에 한함)

-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는 수입제품을 최종 제조한 국가와 상호를 CHEMP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명: 미국(U.S.A), 아메리칸&코리아(American & Korea)

⑯ 수입자, 주소, 연락처(조건부 표시항목: 수입제품에 한함)

- 수입자, 주소, 연락처는 CHEMP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수입자, 주소, 연락처: 솔루티스,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1호, 02-000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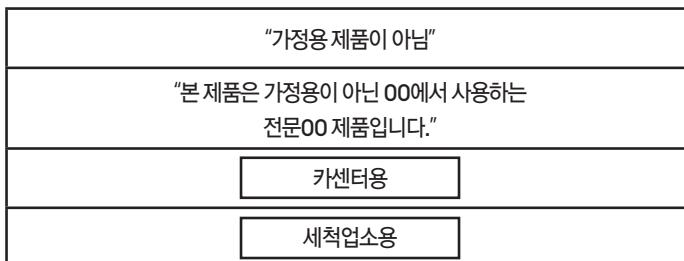
⑰ 어린이보호포장대상 / 비대상 제품의 표시(조건부 표시항목: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제품에 한함)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인 경우 “어린이보호포장” 안내문을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이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함. 안내문의 표시는 [그림 2]와 같이 적색테두리(선 굵기 0.5 mm 이상), 흰배경 위의 적색 글씨(고딕체류)로 가운데 위치하도록 하며, 이 경우 도안의 모양은 바로 세워진 직사각형 형태여야 하며 활자의 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하여야 함

어린이보호포장

[그림]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도안

-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 제품 중 가정용 이외의 목적으로만 제품을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제품의 주표시면에 “가정용 제품이 아님” 또는 특정 사용처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함



[그림] 어린이보호포장 비대상 제품의 표시

⑱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필수 / 조건부 표시항목)

-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은 주요물질, 보존제, 알레르기반응물질, 계면활성제, 기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의 명칭을 ⑯-① ~ ⑮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함

- 사용물질

표시 예) : • 주요물질: 파라핀왁스, 향료(d-리모넨 등) • 보존제: 에탄올 • 계면활성제: 알킬벤젠솔폰산염(음이온계)
• 알레르기물질: 아밀신남알 • 기타물질: 수산화나트륨

⑯-① 주요물질(필수 표시항목)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주요물질(최대함량), 주요물질(주요기능)에 기재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최대함량물질이 물인 경우 그 다음으로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물질을 추가로 기재해야 함. 주요물질(주요기능)이 향료인 경우 기능을 부가하여 표시해야 하며(예: 향료(리모넨)) 또한 두 개 이상의 혼합물로 구성된 경우 향료(대표물질명 등)으로 기재하여야 함

표시 예) : 주요물질: 파라핀왁스, 향료(d-리모넨 등)

⑯-② 보존제(조건부 표시항목: 보존 기능 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보존제로 기재하였던 모든 성분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보존제: 에탄올

⑯-③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조건부 표시항목: 알레르기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은 알레르기기능물질이 제품에 0.01% 이상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알레르기물질: 아밀신남알 또는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아밀신남알

<표>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목록

물질명	CAS No.	물질명	CAS No.
아밀신남알	122-40-7	벤질신나메이트	103-41-3
벤질알코올	100-51-6	리날로올	78-70-6
신나밀알코올	104-54-1	벤질벤조에이트	120-51-4
시트랄	5392-40-5	시트로넬롤	106-22-9
유제놀	97-53-0	헥실신남알	101-86-0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107-75-5	리모넨	138-86-3 5989-27-5 5989-54-8
이소유제놀	97-54-1	매칠2-옥티노에이트	111-12-6
아밀신나밀알코올	101-85-9	알파이소메칠이오논	127-51-5
벤질살리실레이트	118-58-1	하이드록시이소헥실-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	31906-04-4
신남알	104-55-2	참나무이끼추출물 ¹⁾	90028-68-5
쿠마린	91-64-5	나무이끼추출물 ¹⁾	90028-67-4
아니스에탄올	105-13-5	제라니올	106-24-1
파네솔	4602-84-0	부틸페닐메칠프로피오날	80-54-6

1) 아트라놀(CAS No 526-37-4)과 클로로아트라놀(CAS No 57074-21-2)은 참나무이끼추출물과 나무이끼추출물의 구성성분임

⑯-④ 계면활성제(조건부 표시항목: 계면활성제 기능이 함유된 경우에 한함)

- 제품 내 계면활성제의 기능으로 사용된 모든 물질은 “물질명(계열)”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계면활성제: 알킬벤젠슬픈산염(음이온계)

※ 참고) 계면활성제의 계열 : 음이온계, 비이온계, 양쪽성 이온계, 양이온계, 기타 등

⑯-⑤ 형광증백제(조건부 표시항목: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에 한함)

-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함

표시 예) : 형광증백제 2,2'-[1,2-에탄딜디-4,1-페닐렌]비스벤조옥사조일

⑯-⑥ 기타물질(조건부 표시항목: 국내 관리규제에 해당하는 물질 함유 등)

- 제품에 아래의 구분에 따른 물질이 사용된 경우 물질명을 표시하여야 함. 다만, 해당물질이 ⑯-① ~ ④ 중 어느 하나의 구분에서 그 물질의 명칭이 표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¹⁾
- 2)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¹⁾
- 3) 화학제품안전법 제3조7호에 따른 살생물물질¹⁾
- 4) 화학제품안전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품에 의도적으로 함유된 나노물질
- 5) 문신용염료에 사용된 모든 물질¹⁾

표시 예) : 기타물질: 수산화나트륨, 이소프로필벤젠

* : 환경부 고시 (인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별표6) 참고

⑯ 신호어 및 그림문자(조건부 표시항목: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 다만 산도조절제는 제외)

- 제품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이 혼합물 기준 이상으로 사용된 경우,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혼합물 분류기준에 따른 신호어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호어의 표시는 눈에 띠는 방법으로, 그림문자의 크기는 최소면적이 1 cm²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 참고) 신호어란 유해성의 상대적 척도를 제품에 표시하여 제품의 잠재적 유해성에 대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알리도록 하는 것임.
고시에서 사용하는 신호어는 '위험' 및 '경고'이며, '위험'은 '경고'보다 유해성의 척도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적용함



[그림] 신호어의 종류

※ 참고) 그림문자란 제품의 유해·위험성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임. 이러한 그림문자는 정사각형 안에 표시되어야 하며, 흰색 배경에 검정색으로 상징을 표기하고 빨간색 테두리를 갖추어야 함



[그림] 그림문자의 종류 및 의미

⑯ 사용방법(필수: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 / 조건부 표시항목: 해당없는 제품 생략가능)

-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은 '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필요 시 닫는 방법 포함)'에 대한 문구를 눈에 띠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이 경우, 표시면이 아닌 용기의 외면 덮개 등에 문구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다만,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용법을 표시하여야 함. 그 외 제품은 특정 용법이 적용되는 등 소비자의 사전 숙지가 필요한 경우 표시할 수 있음

② 사용상 주의사항(조건부 표시항목: 품목, 용도, 제형, 함유물질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눈에 띠는 방법으로 표시)과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일반 표시) 문구를 아래의 표에서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함. 다만 중복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로 조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음.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에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함
- 예)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표> 제품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구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세정제, 살균제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제품과 섞어 사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섞어 사용하지 마시오.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세정제 (염산 또는 황산이 사용된 제품에 한함. 다만, 산도조절제로 사용된 경우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장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접착제, 경화촉진제 ※ 틀루엔, 초산에틸, 메탄ol 중 어느 하나의 화학물질이 사용된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흡입 등 오·남용을 하지 마시오.
자동차용 부동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관 시에는 부동액임을 알 수 있도록 기존의 용기 또는 부동액 표시가 된 별도의 용기를 사용하고, 밀봉하시오. 에틸렌글리콜형의 부동액과 프로필렌글리콜형의 부동액을 섞어 쓰면 어는점 등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므로 혼용하지 마시오.
자동차용 워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알코올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내기 순환모드에서 사용하시오. 워셔액을 사용 후에는 창문을 1~2분간 내려 환기를 하시오.
인쇄용 잉크·토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을 교체·제거할 때 내용물의 누출에 주의하시오. 내용물 누출시 분진·미스트·증기의 흡입 또는 피부접촉에 주의하시오. 가정용 진공청소기로 토너를 청소하지 말고, 젖은 천으로 닦아내시오.²⁾
초 (전용 받침대가 없는 제품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에 타지 않는 초 받침대를 사용하시오.
습기제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습막을 찢거나 벗기지 마시오.³⁾ 흡습제는 물과 닿으면 발열 반응이 나타나 위험하니, 흡습제를 꺼내지 마시오. 흡습제나 조제액이 누출되어 닿으면 식물의 생장이나 금속의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습기제거제를 불에 대고 건조시키지 마시오.
제품의 용도가 자동차 외부용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 실내에서는 사용하지 마시오.

구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살균제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 또는 동물에 직접 사용(분사)하지 마시오. 공기 소독(연무 소독, 고압분사용 소독장비 활용하는 경우 포함)의 용도 사용을 금지하오니, 물체 표면에만 사용하시오.⁴⁾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내용물을 마시거나, 내용물이 눈 또는 피부에 닿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 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제품의 용도가 칫솔 살균용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 사용 후 칫솔을 반드시 행구시오. 	
제품의 용도가 전기분해형 살균기용인 경우	일반물체용, 물걸레 청소기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의 사용방법 및 표준사용량을 반드시 지켜 사용하시오. 식품 또는 식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변기수조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기 뚜껑을 내리고 물을 내리시오.
제품의 제형이 캡슐형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가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제품의 제형이 액체형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의 내용물을 분무기 등에 담아 분사하지 마시오. 	
가연성가스를 사용하는 스프레이형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에 불꽃(spark)이 발생되는지 확인하고, 일정량을 분사한 후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하시오.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오. 	
어린이보호포장대상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용기와 결합된 뚜껑을 얹기로 벗기지 마시오. 	
특정조건에 따라 어린이 보호포장 적용 예외 제품 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아니한 제품으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가능물질 사용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가 민감하거나 손상된 사람은 제품을 장기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시오. 	
강도시험 대상에서 제외된 유리용기 사용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기를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마시오. 	
일회성 전량 소모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봉 후 내용물을 즉시 사용하시오. 	
공연용 포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연 등을 위해 직접 사용 시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주 : 1) 모든 용도의 제품에 적용함

2) 제품의 제형이 분말형인 제품에 한함

3) 투습막이 있는 제품에 한하며, 투습막에 직접 표시할 수 있음

4) 제품의 제형이 분사형인 제품에 한함

5) 가정에서 보관·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거나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함

<표> 제품별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구분	권장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기 전에 표시사항을 확인하시오. · 표시된 사용방법, 표준사용량, 유통기한 등을 지켜 사용하시오. · 별도로 제공된 첨부문서를 확인하시오.⁶⁾
인체 노출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 흡입하거나 마시지 마시오.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 다량 흡입시 위해가 우려되니 사람이나 동물, 공기중에 분사하지 마시오. · 정갑, 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 사람에게 직접 뿌리거나 분사되는 내용물을 흡입하지 마시오. · 눈보다 높은 곳에서 사용하면 분사액이 눈에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오. · 사용한 곳에 제품의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하시오.
용도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사항에 기재된 제품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 용기를 임의로 바꿔 사용하지 마시오. · 변색, 틸색이 우려될 경우에는 먼저 눈에 띠지 않는 부위를 정해 소량으로 시험해 본 후 사용하시오. · 섬유 변색 및 금속표면 부식에 주의하시오.
화재·폭발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기를 가까이 하지 마시오. · 직사광선이나 열기에 노출시키지 마시오. ·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시오.
내용물 누출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넘어진 채로 두면 액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 방지하지 마시오. · 용기를 떨어뜨리는 등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 넘어지거나 기울어진 상태로 사용하지 마시오. · 제품의 용기를 억지로 분리하거나 강한 충격을 가하지 마시오. · 제품을 사용한 후에는 내용물이 잔류하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이 닦으시오.
보관·저장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오. · 사용 후 잔량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시오. ·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오. ·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시오.
살균제, 기피제, 살조제 및 목재용 보존제 등 제품의 잔여물 폐기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 후 잔여물이 용기에 들어있을 경우 세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오. · 사용 후 잔여물이 환경에 직접 배출되지 않도록 하시오. · 사용 후 용기를 재사용하지 마시오.

주 : 6) 최종 사용자에게 동일 제품을 박스 단위로 포장·판매하여 포장 내 첨부문서를 하나만 제공할 때에는 제품의 곁면에 별도로 표시할 수 있고, 표시사항의 명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㉑ 응급처치(조건부 표시항목: 어린이보호포장, 알레르기반응물질 함유 등에 한함)

- 응급처치 문구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필수문구(눈에 띠는 방법으로 표시)와 권장문구(일반표시)를 선택하여 표시하여야 함. 다만 중복 문구는 생략하거나 유사한 문구로 조합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어로 변경할 수 있음

예)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표> 제품별 필수 응급처치 문구

구분	필수 응급처치 문구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오.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별표 6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 가능물질 사용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자극 반응 또는 붉은 반점이 나타나면 의학적 조치를 받으시오.

<표> 제품별 권장 응급처치 문구

구분	권장 응급처치 문구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품의 용기 또는 표시사항 정보를 보여주시오. 제품에 노출되어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제품에 직접 노출 되었다면, 노출된 부위를 세척하거나 노출물을 제거하시오.
경구노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오.
경피·안구노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시오. 눈이나 피부에 묻으면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오.
흡입노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흡입하여 호흡이 어려워지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㉒ 안전기준확인 마크(필수 표시항목)

- 안전기준확인 마크는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야 함. 이 경우, 마크의 색상은 유색 또는 단색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마크의 크기는 표시면의 크기에 따라 조정하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함. 다만, 안전기준 미고시 제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안전기준확인 마크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 도안

㉓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번호(필수 표시항목)

- 신고번호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신고번호를, 승인번호는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승인번호를 눈에 띠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

[예] 신고번호: 1234, 1234, 1234

㉔ 기타(그림기호 표시)(조건부 표시항목)

- 그림기호는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등의 문구를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기호로 표시하는 방법을 말함
 - 그림기호를 표시할 때는 아래와 같이 “©A.I.S.E.”를 표시하여야 하며, 관련 웹주소(www.cleanright.eu)는 같이 표시할 수 있음
 - 그림기호는 제품 곁면 또는 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브랜드나 상표 등의 광고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 그림기호의 색상은 검정색 대신 다른 어두운 색을 사용할 수 있으나, X 표시의 경우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해야 하며, 그림기호의 크기는 1cm²이상이어야 함
 - 그림기호는 아래 표에서 정한 문구로만 연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정하고 있지 않는 다른 어느 문구와 혼용하여 표시할 수 없음



[그림] 그림기호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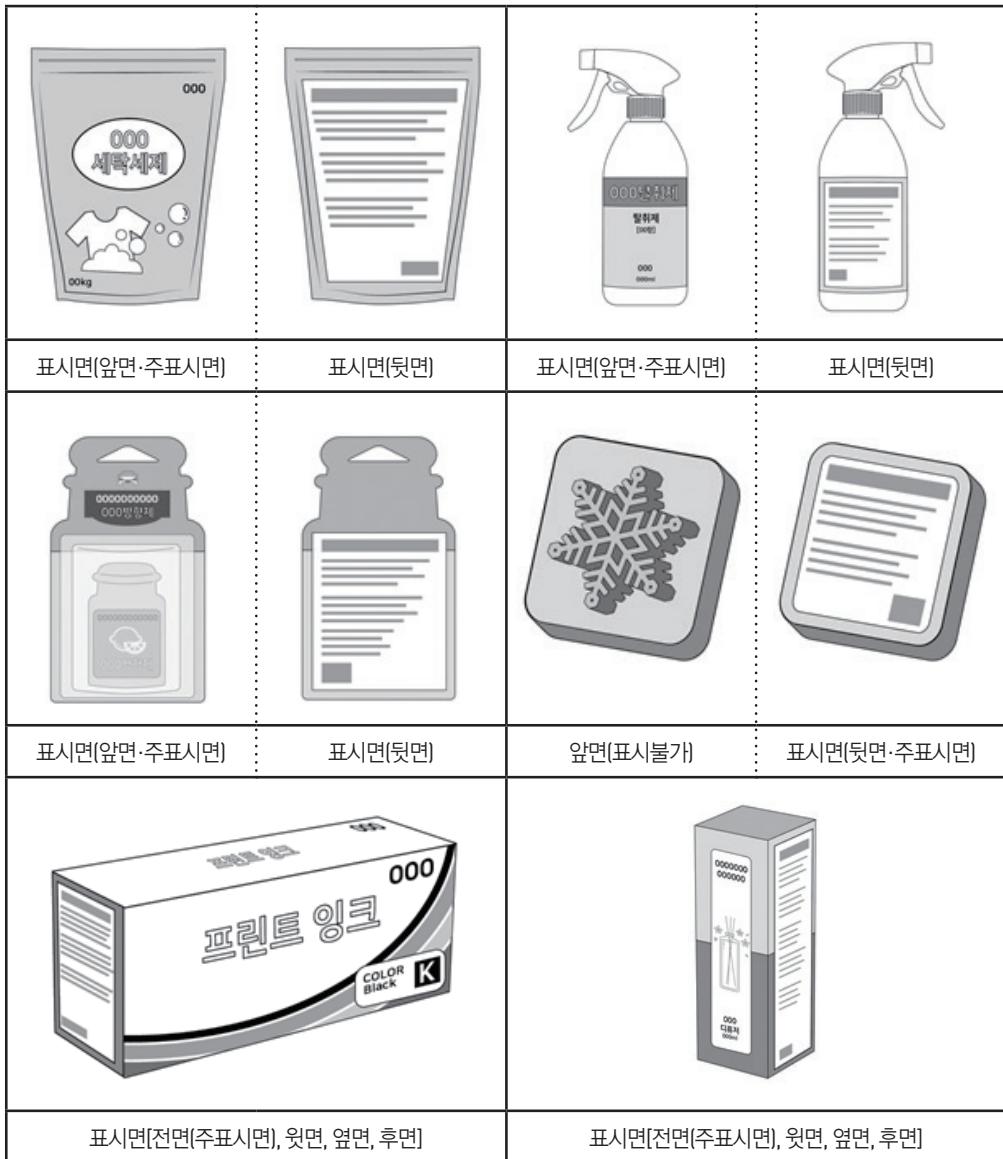
<표> 표시사항 문구별 그림기호 도안

구분	필수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	
	사용상 주의사항	·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 내용물이 눈에 닿지 않도록 하시오. ·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씻어내시오. · 눈에 들어갔을 때는 깨끗한 물로 씻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의사와 상의하시오.
	응급처치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내용물이 눈이나 피부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시오. · 장갑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시오.
	응급처치	· 내용물을 먹거나 삼킨 경우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와 상의하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사용 후 잔량은 잘못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원래의 용기에 보관하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시 환기를 충분히 하시오.
	사용상 주의사항	· 용기를 항상 밀봉하여 보관하시오.

4. 표시사항의 표시 위치

① 표시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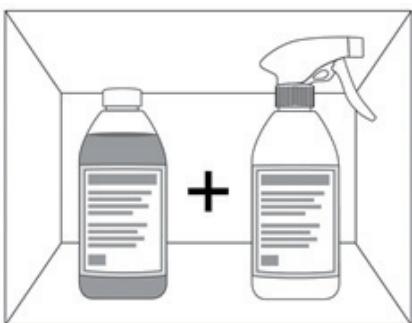
- 표시사항은 제품의 “표시면”(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아래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을 제외하고 글자나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에 표시하여야 함.
표시면 중에서도 제품의 광고 또는 디자인 등 가장 먼저 보이는 면을 주표시면이라고 함



[그림] 제품의 형태별 표시면의 위치

② 제품 곁면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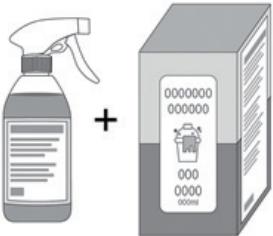
- 표시사항은 제품의 곁면에 우선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제품의 내용물을 사용하기 위한 별도의 전용 용기가 구성품으로 있는 경우에도 그 용기의 곁면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제품을 둘러싼 포장이 있지만 제품 곁면의 표시가 보이는 경우에는 포장에 추가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

표시 위치	예시
제품 곁면의 표시면에 표시	
별도의 전용용기가 있는 경우, 내용물이 담긴 용기와 전용용기의 표시면 모두 표시	
포장이 있지만 제품 곁면의 표시가 보이는 경우, 제품 곁면의 표시면에 표시	

[그림] 제품의 형태별 제품 곁면의 표시 위치

③ 제품 곁면 이외의 표시

- 표시사항은 제품의 곁면에 우선으로 표시하여야 하지만, 제품 곁면에 표시된 표시가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포장에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함. 다만, 고시에 따른 제품 곁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제품의 경우, 표시를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표시하거나, 표시가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등으로 부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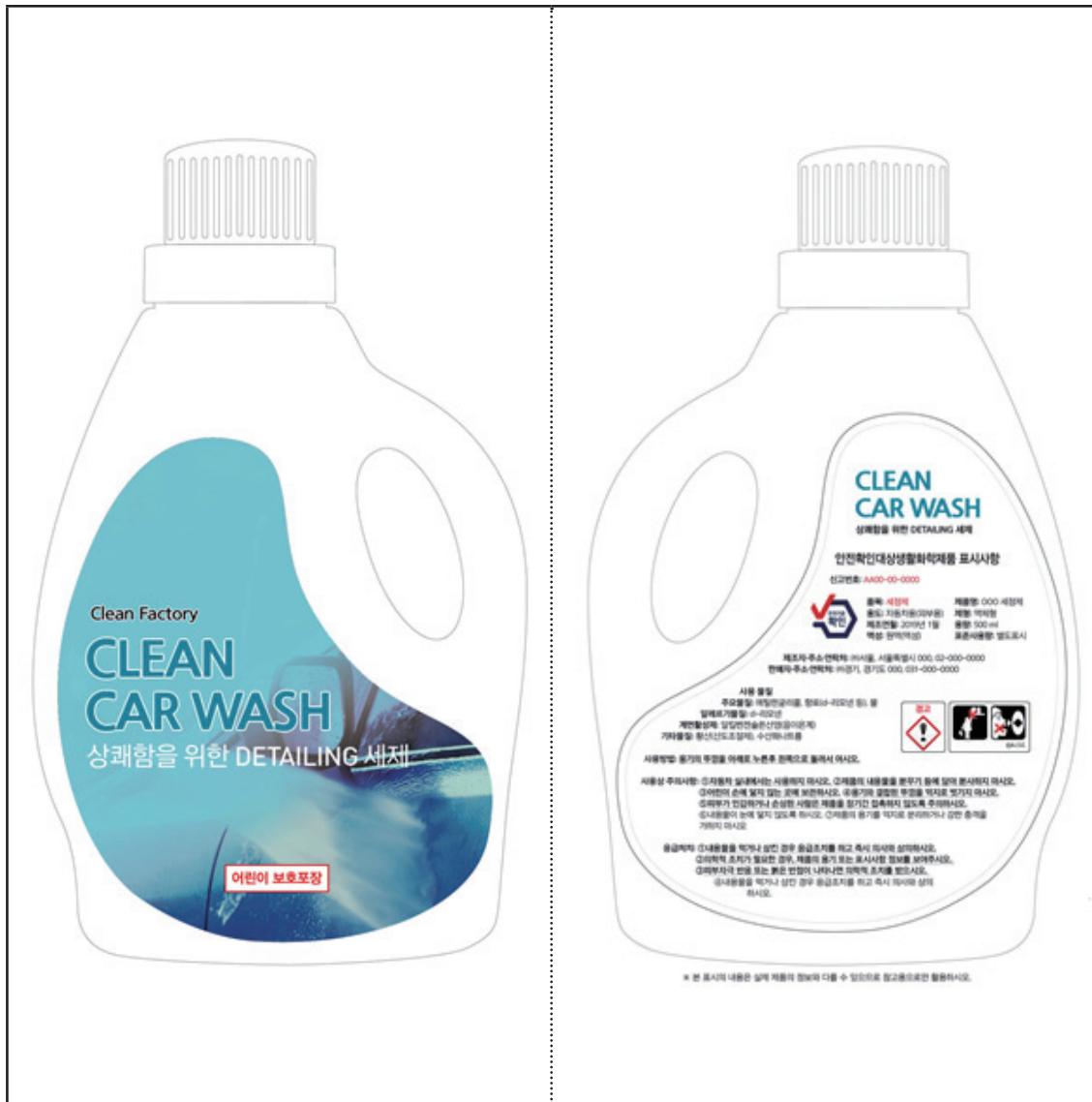
표시 위치	예시
제품 곁면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제품 곁면과 포장의 표시면 모두 표시	
제품 곁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경우, 포장에 표시	
제품 곁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경우, 첨부문서에 표시	
제품 곁면에 표시가 곤란하거나 표시할 실익이 낮은 경우, 표시가 기재된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 부착	

[그림] 제품의 형태별 제품 곁면 이외의 표시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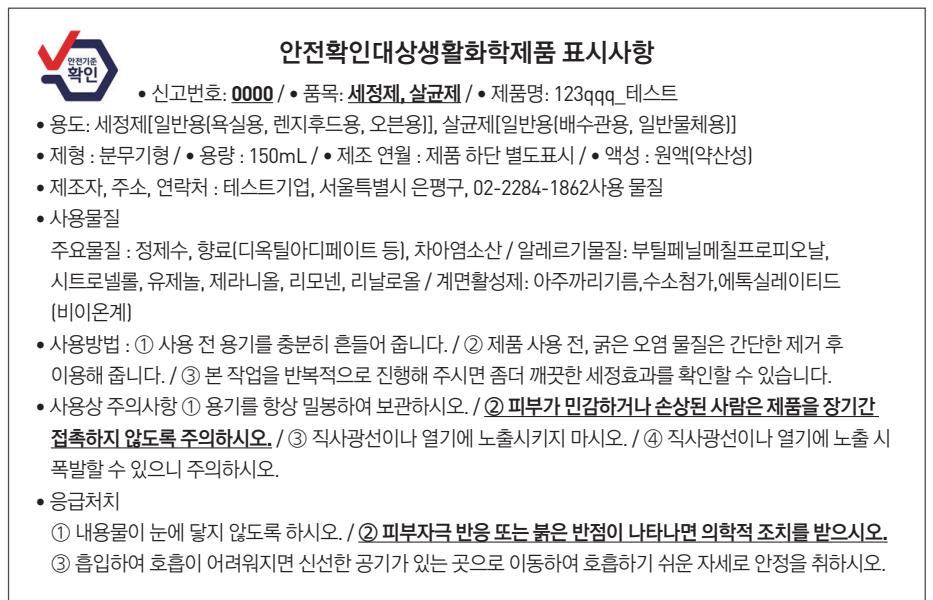
5. 표시면적에 따른 표시사례

① 표시면의 면적이 100 cm^2 초과인 경우

- 제품의 곁면 또는 포장 등의 표시면이 100 cm^2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든 표시사항을 표시면에 기재하여야 함. 다만, 제품 곁면에 표시된 표시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아 포장의 표시면에도 표시하는 경우에는 사용방법, 사용상 주의사항, 응급처치 사항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그림] 표시면적 100 cm^2 초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 사례

[그림] 표시면적 100 cm² 초과 생활화학제품 표시 사례(다기능 제품)

① 표시면의 면적이 100 cm² 이하인 경우

-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 등의 표시면이 100 cm² 이하인 경우 아래와 같이 최소 정보를 표시하고 나머지 표시사항은 첨부문서 또는 제품 겉면 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함. 다만, 제품 겉면에 표시된 사항이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 포장에 모두 표시하여야 함

표시면의 면적이 50 cm ² ~100 cm ² 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주표시면>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어린이보호포장</div>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신고번호: AA00-00-0000 품목: 세정제  제품명: 000 세정제 주요물질: 에틸렌글리콜, 향료(d-리모넨 등), 물 제조자(수입자)·연락처: (주)서울, 02-000-0000
표시면의 면적이 50 cm ² 미만인 제품 겉면 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표시하는 경우	
신고번호: AA00-00-0000 품목: 세정제 제품명: 000 세정제	

[그림] 표시면적 100 cm² 이하 생활화학제품 표시 도안

6. 기타 표시사항 작성 시 주의사항

① 표시사항 활자의 크기 및 스타일

- 표시사항 활자의 크기는 고시에 따라 8포인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표시면의 면적이 200cm² 미만인 경우 6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활자의 종류(글자체)는 어린이보호포장과 신호어의 표시를 제외하고 고시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지만, 훌림체 등 기울어진 활자보다는 신명조, 고딕체류 등 명확하고 글자의 장식이나 기울임이 없는 글자체를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② 눈에 띠는 표시

- 눈에 띠는 표시는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말하며, △품목, △신고번호, △신호어, △사용상주의사항(필수), △응급처치(필수), △사용방법(어린이보호포장 용기의 여는 방법)은 눈에 띠는 표시를 하여야 함. 눈에 띠는 표시 대상 외 표시항목 및 내용은 작성자 임의대로 눈에 띠는 표시를 할 수 없음

③ 표시광고 제한 문구

-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광고를 포함한 제품의 라벨에는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무해한”, “인체·동물친화적”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④ 제품 신고정보와 표시정보의 동일성

- 표시사항은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에 기재·제출된 정보와 동일하여야 함.
향후 제품과 관련된 일련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변경신고를 한 후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야 함

⑤ 기타

- 화학물질명을 포함하여 표시사항에 기재되는 모든 정보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외국어를 표시하게 되는 경우 “한글(English)” 와 같이 외국어 활자의 크기가 한글보다 작아야 함
- 제품에 함유된 전성분 등 필수 표시 대상 물질 외 성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외 물질”이란 항목을 생성하여 물질의 표시를 할 수 있음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체크리스트 |

표 시 항 목	확인
1. 품목	<input type="checkbox"/>
2. 제품명	<input type="checkbox"/>
3. 용도(표백제의 경우 계열 함께 표시)	<input type="checkbox"/>
4. 제형	<input type="checkbox"/>
5. 제조년월	<input type="checkbox"/>
6. 유통기한(해당없는 제품 생략 가능)	<input type="checkbox"/>
7. 중량·용량·개수·매수·크기	<input type="checkbox"/>
8. 어는점(자동차용 워셔액 및 부동액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9. 액성(세정제품 및 세탁제품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10. 표준사용량(해당없는 제품 생략 가능)	<input type="checkbox"/>
11. 효과·효능(승인 대상 제품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12. 제조자, 주소, 연락처(국내 제조 제품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13. 판매자, 주소, 연락처(ODM방식으로 국내 제조된 제품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14. 제조국명 및 제조회사(수입제품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15. 수입자, 주소, 연락처(수입제품에 한함)	<input type="checkbox"/>
16. 어린이보호포장 대상/비대상 제품의 표시	<input type="checkbox"/>
17.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input type="checkbox"/>
18. 신호어 및 그림문자	<input type="checkbox"/>
19. 사용방법(해당없는 제품 생략 가능)	<input type="checkbox"/>
20. 사용상 주의사항	<input type="checkbox"/>
21. 응급처치	<input type="checkbox"/>
22. 안전기준 확인 마크	<input type="checkbox"/>
23.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input type="checkbox"/>
★ 제품 포장 및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등)	<input type="check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제조 또는 수입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한문구 사용 및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위반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관련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